

농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7.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1. 개정이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제45조제1항 개정)

-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 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 ----- ----- ----- ----- ----- ----- ----- ----- ----- ----- ----- ----- ----- ----- 다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u>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 인정되면 잔여 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7